세금계산서와 차이 나는 매출액

글_ **조완석**(공인회계사)

이번 호는 진행률매출액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및 업무협의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 또한 이러한 진행률매출액이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PO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진행률매출액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기준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진행률매출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회계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진행률 산정방법이며, 〈표1〉의 세 가지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번으로 그 이유는 이 방법이 적용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원가의 발생정도가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령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특정시점에 원가의 투입이 집중되는 경우는 다른 적정한 진행률 산정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적정한 진행률 산정방법이 선택되었다면 결산시점에 진행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률을 산정하여 누적매출액 및 누적매출원가를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적용될 때는 대부분의 소규모 벤처기업의 경우 기중에는 모든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준의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다가 결산시점에 진행중인 용역에 대해서만 진행률 매출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적인 편의는 〈표1〉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조항 및 IPO 목적과 연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상장회사 또는 등록회사가 아닌 회사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진행률 매출액의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의 강제를 면제하여 다른 간편한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장 또는 등록이 되면 진행률 매출액의 적용이 강제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IPO를 위한 등록예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절차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용역매출에 대한 진행률 매출액의 적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PO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등록예비심사청구 1년 전부터는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1〉

구 분	인식방법	진행률 산정방법	중소기업특례
제품매출	**인도기준**	N/A	
용역매출	진행기준	다음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 선택 ㉮ 총예상작업량(또는 작업시간) 대비 실제작업량(또는 작업시간)의 비율 ㉯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적용 단, 상장회사 또는 등록회사는 배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조항, IPO 목적 등 고려 필수